

물질 안전 보건 자료 (MSDS)

Dicobalt hexacarbonyl tert-butylacetylene

Date of Issue: February, 26, 2014

Revision: 1.4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1.1 제품명: Dicobalt hexacarbonyl tert-butylacetylene

1.2.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권고용도: For R&D use only.
- 사용상의 제한: Not for drug, household or other uses.

1.3. 제조자 및 공급자 정보

- 회사명: (주)디엔에프
-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32번길 142
- 담당부서: 반도체재료연구센터
- 전화: 042-932-7939
- Fax: 042-932-7947
- 긴급연락번호: 031-205-7939

2. 유해 · 위험성

2.1. 유해 · 위험성 분류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 구분 2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 구분 2A
- 발암성 물질 : 구분 2
-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 구분 3 - 마취작용

2.2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 경고

- 유해 · 위험 문구

H 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 H 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 H 351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 H 336 줄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 예방조치 문구

- 예방

- P 201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십시오.
- P 202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 P 261 분진·흙·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십시오.
- P 264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
- P 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십시오.
- P 280 보호장갑, 보호의, 보안경, 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 P 281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 대응

- P 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 321 (...) 처치를 하시오.
- P 362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탁하십시오.
- P 302+P 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
- P 308+P 313 노출 또는 접촉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 P 304+P 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십시오.
- P 305+P 351+P 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십시오. 계속 씻으시오.
- P 332+P 313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 P 337+P 313 눈에 대한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 저장

- P 405 밀봉하여 저장하십시오.
- P 403+P 233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십시오.

- 폐기

- P5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십시오.

2.3 유해 · 위험성 분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 · 위험성

- NFPA 지수 (0-4단계) : 보건-1, 화재-2, 반응성-0
- 주요한 건강 위험성 : 눈자극, 알레르기 반응, 발암성 의심물질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3.1 화학물질명: Dicobalt hexacarbonyl tert-butylacetylene

3.2 관용명 및 이명: (3,3-Dimethyl-1-butyne)dicobalt hexacarbonyl

3.3. CAS no.: 56792-69-9

3.4 EN 번호: 자료없음

3.5 구조식: $\text{Co}_2(\text{CO})_6[\text{HC}=\text{C}(\text{C}(\text{CH}_3)_3)]$

3.6 함유량 (%): >99.5%

4. 응급조치 요령

4.1 눈에 들어갔을 때

15~20분 동안 물로 씻어내시오.

즉시 가끔씩 눈꺼풀을 들어올리면서 눈꺼풀 아래까지 충분히 씻어내시오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4.2 피부에 접촉했을 때

15분 이상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어내시오.

오염된 피복, 신발을 제거하십시오.

오염된 피복은 재사용 전에 충분히 세탁하십시오.

자극이 발생하거나 지속될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4.3 흡입했을 때

즉시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증상(쌉쌉거림, 기침, 숨참, 입이나 목구멍 혹은 가슴의 작열감 등)이 발생할 경우 의사에게 연락하고 병원으로 이동하십시오.

호흡하지 않을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십시오.

호흡이 곤란하면 자격증이 있는 요원에 의해 산소가 관리 되어야 함.

화학물질을 흡입한 경우 즉시 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으시오.

4.4 먹었을 때

구토를 유도하지 마시오.

의식이 있을 경우 즉시 2~3컵의 물이나 우유를 제공하십시오.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4.5 응급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

자료없음

5. 폭발 · 화재시 대처방법

5.1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 적절한 소화제: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물, 일반적인 포말.

- 대형 화재시: 일반적인 소화제를 사용하거나 미세한 물 분무로 살수하십시오.

5.2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열 분해 생성물: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코발트산화물

- 화재 및 폭발 위험성: 경미한 화재 위험이 있음.

5.3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위험없이 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키시오.
- 누출된 물질에 고압 물줄기를 뿌려 비산되지 않도록 하시오
- 추후의 처리를 위한 제방을 축조하시오.
- 주변화재에 적응한 소화제를 사용하시오.
- 물질자체 또는 연소 생성물의 흡입을 피하시오.
- 바람을 안고 있도록 하고 저지대를 피하시오.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6.1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 누출된 물질에 물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시오.
- 누출물질을 손으로 만지거나 접촉하지 마시오.
- 열, 불꽃, 스파크 등 모든 점화원 접촉을 피하시오.
- 위험 없이 할 수 있다면 누출을 멈추게 하시오.

6.2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 대기: 자료없음
- 토양: 자료없음
- 수중: 자료없음

6.3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소량 누출 시
 - 노출지역을 격리하고 관계인 외의 접근을 통제하시오.
 - 누출지역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저장용기를 옮기시오
 - 바람을 안고 있도록 하고 저지대를 피하시오.
 -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키시오.
 - 추후 처분을 위해 누출물질을 적당한 용기에 옮겨 수거하여 조치하시오.
- 다량 누출 시
 - 노출지역을 격리조치하고 관계자 이외의 접근을 통제하시오.
 - 누출물질의 처리를 위해 제방을 축조하여 관리하시오.
 - 상하수도 및 하수도에서 떨어진 곳에 두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7.1 안전취급요령

- 미 숙련된 사람은 본 화학제품이나 해당 화학제품이 들어있는 용기를 취급하지 마시오.
- 적합하고 인증된 안전, 보호장비를 사용하시오.
- 화학물질과 신체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시오.

흡 후드 등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 취급하시오.

7.2 안전한 저장 방법

강산화제, 강산, 식품, 사료와 접촉을 피하시오.

밀봉하여 저장하시오.

불활성조건하에서 화학물질을 사용, 저장하시오.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저장하시오.

접지, 등전위 접지가 필요함.

혼합금지물질과 접촉을 피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8.1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국내 규정 : 자료없음
- ACGIH 규정 : TWA - 0.02mg/m³ (as Co)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자료없음

8.2 적절한 공학적 관리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고 적합한 제어풍속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시오.

물질이 폭발농도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기장치에 방폭장치를 설치하시오.

해당 노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시오.

8.3 개인보호구

- 호흡기 보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눈 보호
작업 시 발생하는 각종 비산물과 유해한 액체로부터 눈과 얼굴(머리의 전면, 이마, 턱, 목앞부분, 코, 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경과 보안면을 착용하시오.
근로자가 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 손 보호
손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불침투성 장갑을 착용하시오.
- 신체보호
피부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불침투성 보호의를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9.1 외관

- 물리적 상태 : 액체
- 색 : 어두운 빨간색

- 9.2 냄새 : 자료없음
- 9.3 냄새 역치 : 자료없음
- 9.4 PH : 자료없음
- 9.5 녹는점/어는점 : 자료없음
- 9.6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52 °C at 0.8 torr
- 9.7 인화점 : 98 °C
- 9.8 증발 속도 : 자료없음
- 9.9 인화성(고체, 기체) : 해당없음
- 9.10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자료없음
- 9.11 증기압 : 40 °C at 0.1 torr
- 9.12 물 용해도 : 불용성
- 9.13 증기밀도 : 자료없음
- 9.14 비중 : 자료없음
- 9.15 n 옥탄올/물 분배계수 : 자료없음
- 9.16 자연발화 온도 : 자료없음
- 9.17 분해 온도 : 자료없음
- 9.18 점도 : 자료없음
- 9.19 분자량 : 368.071 g/mol

10. 안정성 및 반응성

- 10.1 화학적 안정성: 밀폐용기에서 보관시 실온에서 안정함.
- 10.2 유해 반응의 가능성: 중합되지 않음.
- 10.3 피해야 할 조건: 공기와 장시간 노출을 피하십시오.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상수도 및 하수도에서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 10.4 피해야 할 물질: 가연성 물질, 산, 산화제
- 10.5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열분해 생성물 : carbon monoxide, carbon dioxide, cobalt/cobalt oxides
(100 °C 이상에서 분해함)
 - 물 또는 공기와 접촉시의 분해 생성물 : carbon monoxide, carbon dioxide

11. 독성에 관한 정보

- 11.1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호흡기: 자료없음
 - 경구: 자료없음

- 눈 접촉: 자료없음
- 피부 접촉: 자료없음

11.2 단기 및 장기 노출에 의한 지연, 급성 영향 및 만성 영향

- 급성 독성
 - 경구: 자료없음
 - 경피: 자료없음
 - 흡입: 자료없음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사람에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일으킴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눈에 자극을 일으킴
- 호흡기 과민성: 자료없음
- 피부 과민성: 자료없음
- 발암성: 국제 발암성연구소(IARC)-인체에 대한 조사결과 불충분한 증거로 구분 2(코발트와 그 화합물)
- 생식세포 변이원성: 자료없음
- 생식독성: 자료없음
- 표적장기·전신독성(1회 노출): 사람에게 두통 및 현기증을 일으킴
- 표적장기·전신독성(반복 노출): 자료없음
- 흡인 유해성: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2.1 수생·육생 생태독성

- 어류: 자료없음
- 갑각류: 자료없음
- 조류: 자료없음

12.2 잔류성 및 분해성

- 잔류성: 자료없음
- 분해성: 자료없음

12.3 생물 농축성

- 농축성: 자료없음
- 생분해성: 자료없음

12.4 토양 이동성: 자료없음

12.5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13.1 폐기방법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하시오.

13.2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명시된 주의사항을 고려하시오.

잔류물이나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폐기하지 말고 공급자를 통해 폐기한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4.1 유엔번호(UN No.): 1993

14.2 적정선적명: Flammable liquid, n.o.s (Dicobalt hexacarbonyl tert-butylacetylene)

14.3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3

14.4 용기등급: III

14.5 해양오염물질: 자료없음

14.6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E

유출시 비상조치: S-D

15. 법적 규제현황

15.1 산업안전보건법: 규정하고 있지 않음.

15.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규정하고 있지 않음.

15.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류 제3석유류, 비수용성

15.4 폐기물관리법: 지정폐기물

15.5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국내 규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없음

- 국외 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드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캘리포니아 제안 65호(음용수 처리 규정):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기타 참고사항

16.1 자료의 출처

본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2006-36)에 의거하여 제작되었음.

16.2 최초 작성일자: 2009년 12월 30일

16.3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개정횟수: 4회
- 최종 개정일자: 2014년 02월 26일

16.4 기타: 자료없음

본 자료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제공기관: (주) 디엔에프
- 긴급연락처
(주) 디엔에프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32번길 142
전화: 042-932-7939
팩스: 042-932-7947